

2019년 「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」 개정 안내

2019.01.15 시행

1. 카드발급 대상 확대

- 고용보험 미가입 중소기업·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
 - ※ 카드 사용 중 고용보험 취득 시 자격 변경 가능

< 근로자 카드 발급 대상 >

① 우선지원대상기업에 고용된 피보험자	⑧ 무급휴직(경영상 이유 90일 이상) 중인 피보험자
②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는 피보험자	⑨ 대규모기업에 고용된 45세 이상 피보험자
③ 고용보험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단시간근로자	⑩ 3년간 훈련 이력이 없는 피보험자
③-1 위의 ③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대규모(중견) 기업의 단시간근로자	⑪ 육아휴직 중인 피보험자
④ 파견 근로자에 해당하는 피보험자	⑫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평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고용한 근로자에 해당하는 피보험자
⑤ 일용 근로자에 해당하는 피보험자	⑬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지역에서 근로하거나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피보험자
⑥ 자영업자인 피보험자	⑭ 「고용보험법」에 따른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재직 중인 근로자
⑦ 180일 이내 이직 예정인 피보험자	

2. 지원 금액

- 3년 200만원, 5년 300만원
- 단, 「고용보험법」에 따른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재직 중인 근로자(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)의 경우, 1년 150만원, 5년 225만원 지원
- 유효기간: 카드 발급일(대상 확정 결정일)로부터 3년
 - ※ 카드 재발급 신청: 유효기간 만료 14일 전부터 가능

3. 자비부담 금액 [2020년 교육과정부터 적용]

- 다음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정부지원기준금액의 100분의 40 자비부담금액 발생함.

「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」 별표 2의 학교교육, 평생교육, 직업교육, [사회복지·상담 보육](#), 문화예술, 부동산, 청소·세탁, 이·미용, 결혼·장례, 스포츠, 식음료조리·서비스, 제과제빵 직종의 경우에는 훈련비 지원기준금액의 100분의 60

4. 퇴사 등의 사유로 카드 발급 사유가 소멸한 경우의 사용기간

-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**6개월**까지로 정함
- 예: 2019.02.15 퇴사 -> 2019.07.31(6개월 기간: 2~7월)까지 사용 가능

5. 카드발급 사용 중지 기준

- 카드발급일부터 **12개월 이내** 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**30일간 카드사용을 중지함**

6. 카드 부정발급 등의 처분 기준

- 훈련생이 출석 대리 체크를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카드를 맡기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출석체크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카드사용정지처분일자로부터 **180일** 동안 사용이 중지됨

7. 미수료, 수강포기 등 중도탈락에 따른 지원제한 기준

구분	제한 처분
1회	· 훈련종료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지원한도액에서 20만원 차감
2회	· 훈련종료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지원한도액에서 50만원 차감 ·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간 카드 사용 중지 · 별표1의「지원금액 지급기준」에 따른 정부지원기준금액의 20% 자부담
3회 이상	· 훈련종료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지원한도액에서 100만원 차감 ·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간 카드 사용 중지 · 별표1의「지원금액 지급기준」에 따른 정부지원기준금액의 20% 자부담

※ 기존 카드발급자가 19년 1월 15일 이후 훈련에 참여하여 중도탈락 또는 미수료를 하더라도 기존 패널티 규정 적용

※ 기존 카드발급자가 19년 1월 15일 이후 카드를 재발급 받아 훈련에 참여하여 중도탈락 또는 미수료를 할 경우, 이전에 발급 받은 카드에서 발생된 패널티는 횡수에 포함되지 않고 1회로 적용됨. (또한, 신규로 발급받은 카드로 훈련참여 시 패널티 자비부담금이 발생되지 않음)